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4.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효율적인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신청한 도의회자료실의 운영 인력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

현 행	→	개 정
55명		57명

- 인력증원 : 2명
 - . 지방사서주사보 1
 - . 기능10등급(사무보조) 1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 따로붙임
-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8항 : 따로붙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사무직원의 정수) 중 "55명"을 "57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